

case

2

와이퍼 블레이드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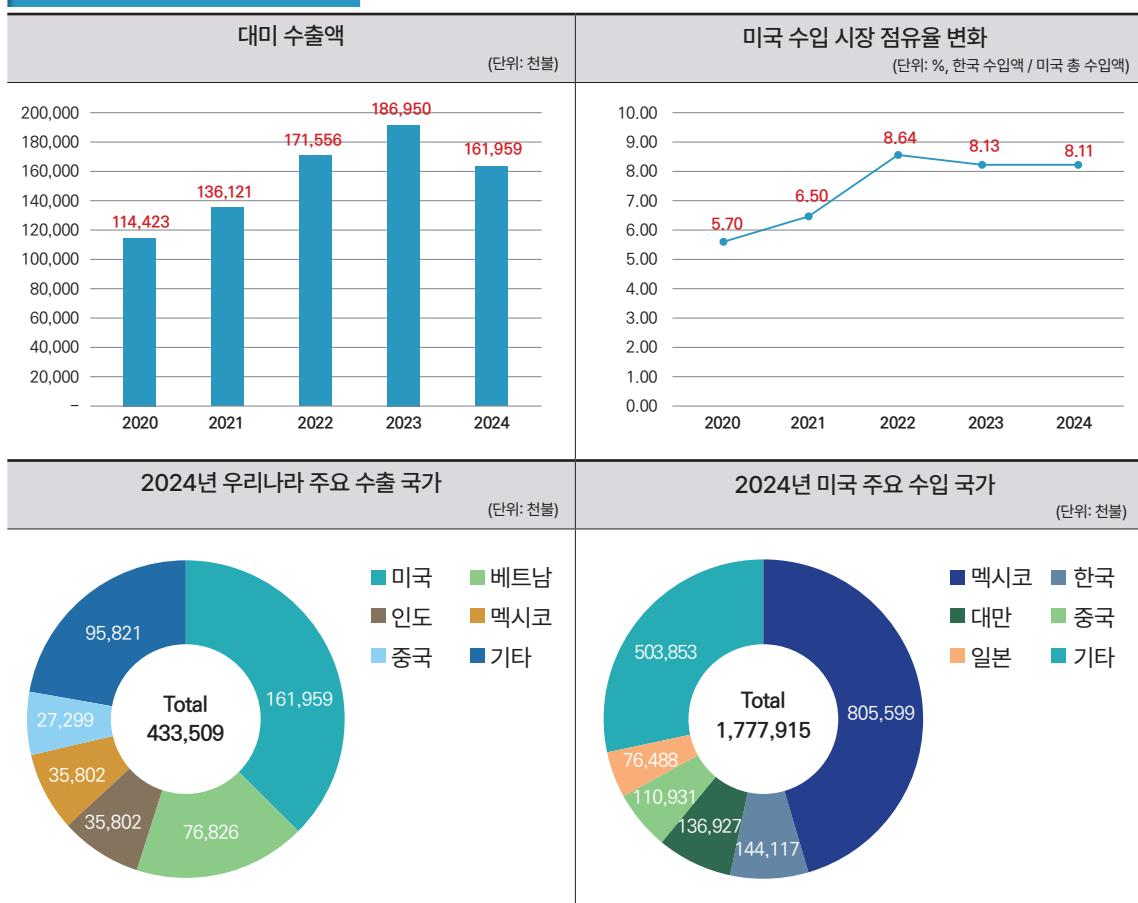
사례명	와이퍼 블레이드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14566 (2021.06.17.)
사실관계	멕시코에서 중국산 강철 코일을 절단, 절곡, 편침하여 플랫 블레이드 버테브라(flat blade vertebra)를 제조하고 중국, 코소보 등에서 수입된 부품들과 최종 조립하여 와이퍼 블레이드 생산
쟁점 및 판정	<p>①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중국산 강철 코일은 멕시코에서의 절단, 절곡 공정 등을 통해 특정 제품 사양을 충족하도록 제조되며, 완성된 플랫 블레이드 버테브라의 정밀한 굽힘은 와이퍼 성능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 이므로 강철 코일은 멕시코에서의 공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다고 판단됨이후 행해진 조립 공정은 크게 복잡하진 않으나, 전반적인 조립 공정을 총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멕시코에서 수행된 가공은 수입된 원자재들을 충분히 실질적으로 변형시켰다고 판단되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멕시코임(제301조 무역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법령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I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8512.90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
	미국 기본세율	0 or 2.5%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8512.90호 시장 정보



❖ 자료: K-stat

② 판정사례

사례명 [와이퍼 블레이드]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14566 (2021.06.17.)

사실관계

요청자 Robert Bosch LLC

제품	제품명	• FB3 와이퍼 블레이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철 코일, 후크 커넥터, 홀딩 스프링, 플라스틱 커버 (중국산) • 고무 와이퍼 블레이드 엘리먼트 (유럽산) • 기본 어댑터, 스포일러, 앤드 캡 (코소보산)
	용도	• 차량 앞 유리의 물, 이물질, 먼지를 제거하는 용도
	원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철 코일 : 7217.90.50 • 고무 와이퍼 블레이드 엘리먼트 : 4016.99.60 • 기본 어댑터, 스포일러, 앤드 캡 : 8512.90.90 • 후크 커넥터, 홀딩 스프링, 플라스틱 커버 : 8512.90.90
	HTSUS	• 8512.90.90
	완제품 HTSUS	• 8512.90.90

제조공정



여러 국가산 재료
멕시코로 수입



멕시코에서 중국산
강철 코일 가공



최종 조립



미국 수출

상세공정

1. 중국, 코소보 등의 국가에서 멕시코로 부품 수입
2. 중국산 강철 코일을 절단, 절곡, 편침하여 플랫 블레이드 버테브라 제조
3. 중국, 코소보 등에서 수입된 부품들과 조립하여 최종 제품 생산
4. 미국 수출

쟁점사항

-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1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CBP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부품 또는 재료의 결합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결정적인 쟁점은 수행된 작업의 범위와 해당 부품들이 그 개별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물품의 필수 구성 요소가 되었는지 여부임

❖ 참고 판례: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6 CIT 204, 573 F. Supp. 1149 (1983), aff'd, 741 F.2d 1368 (Fed. Cir. 1984)*

- 조립 작업이 단순하거나 최소한의 수준에 그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판단 요소로는 조립 작업의 성격(예: 조립되는 부품 수), 수행 작업 공정의 다양성, 작업 소요 시간, 숙련도, 세부 작업, 품질 관리가 요구되는지 여부 등의 사항이 있음

❖ 참고 판정: *C.S.D. 80-111, C.S.D. 85-25, C.S.D. 89-110, C.S.D. 89-118, C.S.D. 90-51, and C.S.D. 90-97*

- 만약, 제조 또는 결합 공정이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제품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사례

플렉스 소켓(flex sockets), 스피더 핸들(speeder handles), 플렉스 핸들(flex handles) 제작용 특정 수공구 부품들을 수입하여 미국에서 열처리, 표면 세척, 녹 및 부식 방지 처리 등 수행

판결

해당 부품들이 대부분 수입 전에 냉간성형(cold-formed) 또는 열간단조(hot-forged) 방식으로 최종 형상으로 가공되어 있었으며, 미국으로 수입 후에 수행된 가공(강도를 높이기 위한 열처리, 표면 세척을 위한 샌드블라스트 처리, 녹 및 부식 방지를 위한 전기 도금 처리 등)은 수입 부품의 **명칭**을 변경하지도 않았고, 가공 후 물품의 **성질**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았으며, 해당 물품의 **용도**는 수입 시점에 이미 정해졌다고 판단하여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결함

- 수입 후 가공이 단순한 조립에 그치는 경우, 물리적 변형(physical change)이 발생하지 않는 한 성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제품의 최종 용도가 수입 시점에서 이미 사전 결정되어 있는 경우, 용도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법령 및 분석

❖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2016)*

사례 손전등 생산을 위한 약 50여 개의 원재료 중 백색 LED 및 Hydrogen Getter를 제외한 모든 원재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미국에서 조립

판결 수입된 구성 요소들이 완제품으로 조립된 후에도 개별 부품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수입 당시 이미 손전등 부품으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조립 과정에서 용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

- CBP는 금속 가공 과정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단순히 길이나 폭을 자르는 작업과 달리 완제품 제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합한 형태나 패턴으로 절단하거나 절곡하는 작업은 실질적 변형을 구성한다고 판단해 옴

❖ 참고 판례: *CBP Ruling HQ 055684 (1979.08.14.)*

수입된 강철 튜브를 길이에 맞게 자르고 세척하고 절곡하여 구성 부품의 형상 및 구조로 가공한 경우 또는 강철 튜브를 길이에 맞게 절단하고 평탄화한 후 구멍을 뚫는 가공을 거친 경우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다고 판정함

❖ 참고 판례: *CBP Ruling HQ 555811 (1992.03.20.)*

알루미늄 평판에 대해 다이 컷, 프레스, 특정 모양으로 성형 등의 공정을 거쳐 그릴을 생산한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함

❖ 참고 판례: *CBP Ruling HQ 555265 (1989.07.03.) 및 HQ 557159 (1994.01.11.)*

알루미늄 스트립에 크라우닝, 절단, 천공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 베네치아 블라인드를 생산한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

- 반면, CBP는 주로 조립으로 이루어진 공정에 대해서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데 신중한 태도를 보임

❖ 참고 판례: *CBP Ruling HQ H290528 (2018.02.21.)*

사례 이탈리아에서 제조된 케이싱, 코어, 장착 브래킷을 미국으로 수입하여 케이싱과 코어에 천공하고 장착용 블레이드를 압출·기계 가공·굽힘·크기에 맞게 절단한 후, 코어를 케이싱에 삽입하고 장착 블레이드를 패널에 고정하여 알루미늄 패널을 생산함

판정 미국 내 공정은 완제품 생산을 위한 최소한의 처리에 불과하여 케이싱과 코어의 성질을 본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며, 수입 전 이탈리아에서 행해진 가공이 훨씬 더 복잡하고 본질적이므로 미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

판정 결과

- 중국산 강철 코일은 멕시코에서의 절단, 절곡 공정 등을 통해 특정 제품 사양을 충족하도록 제조되며, 완성된 플랫 블레이드 버테브라의 정밀한 굽힘은 와이퍼 성능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강철 코일은 멕시코에서의 공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다고 판단됨
- 이후 행해진 조립 공정은 크게 복잡하진 않으나, 전반적인 조립 공정을 총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멕시코에서 수행된 가공은 수입된 원자재들을 충분히 실질적으로 변형시켰다고 판단되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멕시코임(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

-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멕시코로,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이 아님

(III) 시사점

- 특정 사양 및 기능이 최종 제품의 본질을 구성하는 경우, 이러한 사양 및 기능을 충족시키는 공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원산지판정에 중요 판단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음

(IV)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14566 (2021.06.17.), <https://rulings.cbp.gov/ruling/H314566>
- CBP Ruling HQ 555811 (1992.03.20), <https://rulings.cbp.gov/ruling/555811>
- CBP Ruling HQ 555265 (1989.07.03), <https://rulings.cbp.gov/ruling/555265>
- CBP Ruling HQ 557159 (1994.01.11), <https://rulings.cbp.gov/ruling/557159>
- CBP Ruling HQ H290528 (2018.02.21), <https://rulings.cbp.gov/ruling/H290528>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1984),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309750/belcrest-linens-v-united-states/>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201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